

※ 본 질문은 모두 4개 문항입니다. 귀하의 정견을 간단하게 밝혀주시요.

질문1

1939년 일제 징병거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만 7천명이 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갇혔고, 현재에도 약 800여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G20 회원국(32개국) 중 병역거부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유일한 국가로, 전세계 병역거부 수감자의 80% 이상이 한국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

알고 있으며, 매우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다양한 신념을 근거로 스스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스스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순자 대선 후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즉각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광범위한 사회복무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2

유엔은 한국정부에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서두르라는 권고를 반복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는 8개국(프랑스, 독일,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슬로바키아, 미국, 호주)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매번 '연구중'이라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이 유엔의 권고를 계속 무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대의 변화, 국제 정세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비단 이런 일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탄압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비난했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해 미국의 편에 서서 침략전쟁의 하수인이 되었던 비겁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상식에 걸맞는, 아니 그 상식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한국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국 내의 보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떤 발언과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질문3

병역거부자들은 무조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이들에게 대체복무제도(사회복무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즉각 인정하고 광범위한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함께 진행되어야 할 정책이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군인에게도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군대 처우 개선, 군대 내의 인권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동시에 광범위한 사회복무제도가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고 가정할 때, 사회복무제도 기간은 그것보다 약간 기간이 긴 1년 6개월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무제도 기간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며, 군 복무기간보다 조금만 길게 시작해 점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집안의 '비장애 남성'만 군대를 가는 불편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국민개병제 하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4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타인과 사회공동체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행동과 신념에 대해 국가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인신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짧게 봐도 1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도입 요구는 우리 사회의 이슈였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고, 광범위한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김순자 대선 후보의 정책 중 하나가 '적극적 평화국가 수립'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 복무기간 1년으로 단축, 군인에게도 법정 최저임금 지급,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광범위한 사회복무제 도입
- 평화헌법에 합당하게 침략전쟁과 이에 동조하는 해외 파병을 금지하는 파병규제법 제정

정책 전환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즉각 중단: 구럼비 바위 생태 복원 등
- 서해상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 설정
- 남한의 방어적 무기체계로의 전환
- 남한과 북한의 상호 군축
- 미국과의 군사적 합의 재검토와 부당한 협정 개정 또는 폐기: 전략적 유연성 합의 무효화, 방위비 분담금 삭감과 SOFA 등 불평등한 협정 및 조약 폐기,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확산방지구상(PSI), 나토 글로벌파트너십 불참 선언